

# 기후부, 해상풍력법 하위법령(안) 공청회 개최

- 정부주도 계획입지 제도 및 주민수용성 절차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김형근)는 3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여성플라자(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해상풍력법’의 핵심인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환경성 검토절차, 주민수용성 확보 방식, 사업자 선정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해 지자체, 지역주민, 어업인,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부주도 계획입지 제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해온 입지 발굴, 주민 갈등, 인허가 지연 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풍황, 환경, 어업, 해상교통, 군작전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사전에 검토한 ‘계획입지’를 지정하고, 해당 입지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정부 주도형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하위법령(안)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입지정보망 구축 및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절차,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수립 사항, 발전사업자 선정 방식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 단계별 환경성 검토 및 주민수용성 절차 명확화

특히,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하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하였다. 정부가 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 해양·환경 영향 조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변경사항 위주로 평가하여 환경적 영향을 단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협의절차 및 의결 방식, 전문기관 지원 및 협의기간 설정 등 주민 참여와 갈등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현장 의견 적극 반영... 하위법령 완성도 제고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령·시행 규칙 등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해상풍력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이번 공청회는 해상풍력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지자체, 지역주민, 어업인, 산업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해상풍력 보급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향후 일정

정부는 공청회 이후 하위법령(안)을 확정하여 해상풍력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올해(2026년) 3월 26일에 맞춰 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 편입 고시 등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1. 해상풍력법 시행령 공청회 개요.  
2. 해상풍력법 하위법령(안) 주요 내용.  
3. 해상풍력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추진 절차.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프라지원팀	책임자	과 장	조진화 (044-201-7761)
		담당자	사무관	배명균 (044-201-7764)
			주무관	한상우 (044-201-7766)

## 1. 개요

- (일시) '26.1.14.(수), 14:00~15:50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봄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 (주최/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한국풍력산업협회 / 한국에너지공단
- (참석) 해상풍력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약 250명)
- (주요내용)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설명 및 의견 청취
  - 현재 입법예고('25.12.9~'26.1.19)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 내용과 제도 도입 취지 설명
  - 해상풍력 업계 및 관계기관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 세부 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 ▶ 개회	-
14:05~14:35	30' ▶ 해상풍력법 하위법령(안) 주요 내용 발표	기후부(인프라팀)
14:35~15:45	70' ▶ Q&A	참석자 전원
15:45~15:50	5' ▶ 폐회	-

## 해상풍력법 하위법령(안) 주요 내용

※ 법제처 심사 등 향후 제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부내용 변경 가능

### 1 주요 내용

#### 거버넌스 구성

- (정부 위원회) 해상풍력위원회 구성, 실무위원회 위임 사항 등 규정
  - (해상풍력위원회) 예비·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부처간 이견 조정, 제도개선 등은 총리 소속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승 2조)
    - \*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각 부처 장관(국정원장·해경청장 포함), 민간전문가 등 25명 이내
  - (실무위원회) 기본설계 변경, 사업자선정 취소, 민관협의회 분쟁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심의·의결(승 5조)
    - \* 기후부 차관(위원장), 각 부처 실국장, 민간전문가 등 25명 이내

#### <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비교 >

구 분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방안	□ 위원장(2) : 국무총리 + 민간위원(대통령 임명)	□ 위원장(1) : 기후부 차관
	□ 간 사(1) : 기후부 장관	□ 간 사(1) : 해상풍력발전추진단장
	□ 구성인원(위원장 포함 총 25명 내외) - 당연직(중앙행정기관의 장) - 위촉직(국무총리 위촉)	□ 구성인원(위원장 포함 총 25명 내외) -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 민간전문가 ※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
정족수	□ 재적 1/2 이상 출석, 출석 1/2 이상 찬성	□ 운영세칙 별도 제정
심의·의결 사항	□ 계획입지(예비/발전지구) 지정 및 지정해제 □ 기본설계 확정 및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 해상풍력 사업자 관련 분쟁조정 관련사항	□ 위원회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지원기관) 해상풍력위원회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추진단(기후부內) 및 전담기관을 설치·운영(승 8조)

#### 계획입지 지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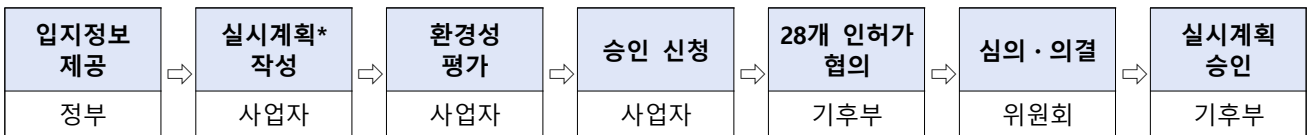
- (입지정보망 구축) 풍황·어업·해양환경·해상교통·군작전 등이 포함된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사업자의 탐사·조사 자료\*도 국가 귀속(승 9·10조)
  - \* 해저 지반조사 자료, 국가유산 영향진단 조사 자료 등

- (예비지구 지정) <sup>기후부·해수부</sup>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예비지구로 지정하거나, <sup>지자체</sup>자체 발굴한 지역을 검토하여 지정(승 11조)
  - \* 풍황이 적합하고, 어업활동·해상교통 안전·군사작전 등 영향이 적은 지역
- (기본설계 확정) 예비지구 대상 환경영향조사(해수부 협의)를 수행하고 단지위치, 시설배치, 수용성확보 등 기본설계 수립·확정(승 13·14조)
- (발전지구 지정) 민관협의회에서 수용성을 확보한 후, 경제성·사업 실현성·산업기여도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발전지구로 지정(승 22조)
  - 총 용량 1GW 초과 발전 지구는, 송전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우선 건설하고 발전사업자에게 비용 회수토록 규정(승 23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지원**

- (사업자 선정)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낙찰 사업자는 정부 先투자 비용(기본설계, 민관협의회 지원 등)을 납부(승 26조)
  - \* 입찰 기준 : 발전단가, 재무건전성, 자금조달능력, 수용성 확보계획, 산업기여도, 사업비적정성 등
  - 입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조항도 마련(승 28~30조)
- (실시계획 승인) <sup>사업자</sup>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성평가서 및 인허가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sup>기후부</sup>인허가 등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승 31조)
  - 전기사업허가·공유수면허가 등 28개 인허가 의제 처리(法 27조)

< 실시계획 승인 절차 >



\* 실시계획 내용 : 발전구역 위치·면적, 사업기간, 자금조달계획, 민관협의회 결과 이행, 손실 보상, 보안·재난대비, 산업기여, 안전확보, 원상회복 등 계획

**환경영향평가·예타 특례 등**

- (환경영향평가 특례) <sup>기후부</sup>기본설계時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고, <sup>사업자</sup>정부조사 대비 변경된 사항만 조사·평가하는 특례 적용(승 32조)

< 환경영향평가 특례 >

현 행		해상풍력법 시행 후	
발전사업자		기본설계(기후부)	실시설계(사업자)
100MW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기후부)</li> <li>* 환경영향평가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환경영향조사(공유수면)</li> <li>↔ 해수부 협의</li> <li>•환경영향조사(공유수면外)</li> <li>↔ 기후부 협의(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성평가 제출</li> <li>- 공유수면: 기후부 ↔ 해수부 협의</li> <li>- 공유수면外: 기후부 검토</li> <li>※기본설계에서 누락·변경된 사항 한정</li> </ul>
100MW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역이용영향평가(해수부)</li> <li>* 해양이용영향평가법</li> </ul>		

- (공공기관 예타 특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신속한 해상풍력 투자가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法 22·23조)
- (산업육성지원) 인력양성, 풍력R&D 지원, 공급망 활성화, 실증단지 확대, 항만·선박 지원 등 해상풍력 산업육성 규정(法 34~41조)

**주민수용성 확보**

- (민관협의회 협의) 기본설계안(정부), 주민 이익공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민 중심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승 15·16조)
  - \* (예시) 지자체·민간 공동위원장, 정부위원(지자체), 민간위원(주민·어민대표) 50% 이상, 공익위원(관련 전문가) 20% 이상으로, 10~25명 구성
- (협의 지원) 의결방법(합의원칙, 2/3출석 2/3찬성), 전문기관 위탁(비용 지원), 재생e법상 지원, 협의기한 설정(최대 1.5년) 등 신속·공정한 협의 지원(승 17조)

**기존 사업자 처우 등**

※ 별도 고시 제정 예정

- (계획입지 편입) 발전지구 해상풍력사업자의 자격이 부여되므로, 계획입지 절차 중 최소한의 과정\*은 통과는 필요
  - \* 관계부처 협의(국방부, 해수부 등), 수용성 확보(민관협의회 협의), 환경성 평가 등

**2 향후 일정**

-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26.1월~'26.2월)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26.3월 初), 법률 시행('26.3.26)

### 붙임 3

## 해상풍력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추진 절차

절 차	주 체	법 률 내 용	하 위 법령
① 입지정보망 운영	기후부, 해수부	풍황, 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 군사작전 등 정보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지정보 구체화 및 보안대책</li> </ul>
② 예비지구 지정	기후부, 해수부	해상풍력이 가능한 후보지역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지구 고려사항 구체화, 변경 승인 기준 마련</li> <li>지자체 신청 예비지구 절차</li> </ul>
③ 기본설계 수립	기후부	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설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설계 구성요소 규정 - 조사·협의 결과 반영, 인허가 사전검토, 계통, 항만 등</li> </ul>
④ 환경영향조사	기후부	해양·환경적 영향조사 등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향조사 주체, 절차, 항목, 협의기간 등</li> </ul>
⑤ 민관협의회 협의	지자체	주민 수용성 확보(어민, 송전선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성, 운영절차, 협의기준 등</li> <li>지자체 지원 제도(가중치, 예산 등) 도입</li> </ul>
⑥ 발전지구 지정	기후부	사업성, 계통 확보 후 발전지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경 승인 대상 기준 마련</li> <li>고시 세부내용 규정</li> </ul>
⑦ 발전사업자 선정	기후부	발전사업자 선정·취소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정절차, 세부기준, 신청서류 등</li> <li>입찰평가위원회 구성·운영</li> </ul>
⑧ 실시계획 제출	사업자	해상풍력 실시계획 작성·승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계획 작성 세부내용</li> <li>실시계획 신청절차, 양식</li> </ul>
	환경성 평가	사 업 자 사전 환경성평가 실시	<p>&lt;기후부, 해수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 실시절차, 평가서 작성방법</li> <li>환경성평가협의회 구성</li> <li>환경성평가 협의 검토기준, 절차 등</li> </ul>
⑨ 인허가 의제처리	기후부	28개 인허가 의제 처리 *전기사업법, 공유수면법 등	
⑩ 착공 신고	사업자	착공신고(공사계획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 양식, 제출서류 등</li> </ul>
⑪ 준공 인가	사업자	준공인가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공인가 고시내용, 제출 서류 등</li> </ul>